

# 官僚의 不正의 原因에 關한 理念的 理論構成

金 海 東

— 차례 —

## 一. 序

### 二. 制度的要因

1. 報酬
2. 安定性의 缺如
3. 行政統制 및 管理基準의 非現實性
4. 其他

### 三. 環境的要因

1. 經濟的 社會的不安
2. 近視眼的生活態度
3. 金錢에 의 過剩依存
4. 公共意識의 薄弱

### 四. 結語

이 글은 筆者が「公務員 制度」에 對한 研究報告의 一部에 收錄된 것을 若干의 内容의 修正을 加하여 提示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 一. 序

公務員도 다른 一般國民과 같이 稅金을 納付하는 國民임에는 틀림없다. 그들도 다른 사람과 같은 欲望과 體面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扶養할 家族을 지니고 있다. 故로 그들에게만 犠牲을 要求하고 儉素한 生活을 強要한다는 것은 이미 無意味한 것이다. 그들도 그들이 하는 正當한 努力의 對價로서 于先 生活의 保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公務員의 不正을 慨嘆하기 前에 公務員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는지에 對한 反省이 先行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政府의 運營이 圓活하지 못하고 民生이 어지러운 原因을 公務員들의 不正에서 찾을려고 한다. 即 公務員들이 非良心의이고 非愛國의이고 私利私欲에만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傾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事實만을 指適하여 두기로 한다.

그 하나는 問題의 解決을 지나치게 사람들의 精神力에 依存하려고 하는 前近代的인 態度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公務員의 不正도 이것을 「良心의이어라」「愛國의이어라」「利他的이어라」하는 口號와 訓示로서 解決할려고 한다.勿論 民生이 어지러운 原因이 公務員의 腐敗에 어느 程度 있다는 것은 事實이나 全的으로 公務員의 腐敗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問題의 解決이 公務員의 精神力 또는 精神的인 자세에 依하여 어느程度 解決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만 가지고 問題가 全部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即 外

科醫의 手術에 依하여서만 解決될 수 있는 것 같은 問題에 關하여도 이것을 「밥을 새워서라도」即 意志力에 依하여 解決하려고 한다. 그러한 것이 臨時的인 解決策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나 24時間의 勤務令만으로 燃料問題를 恒久的으로 解決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事實은 公務員을 마치 不正의 代名詞처럼 보는 態度이다. 그러나 反對로 公務員들이 政府의 規定과 指示대로 生活을 한다면 缺食兒童아닌 缺食公務員이 얼마나 發生할지 想像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다는 事實이다. (圖 1)

公務員의 不正에 關하여는 그러나 最近에 많은 研究가 이루어 졌으며 本研究도 그러한 研究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단지 公務員의 不正과 그 原因을 說明하기 위한 理念型에 관한 理論의 構成을 試圖하였으며 現時點에서의 可能한 解決策을 提示하고자 努力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主로 行政制度的側面과 社會的 環境的側面에서 分析한 것이다.

## 二. 制度的要因

### 1. 報酬

後進國 行政의 特徵의 하나는 政府에서 公式으로 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報酬가 그의 主要收入源이 아니라는 點이다. 即 最少限의 生計費에 未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指摘되었으며 이에 관한 專門的인 研究도 많이 이루어 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報酬引上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解決하지 못하는 理由를 結局 財政難에 歸着시키고 있다. 그러나 筆者は 오히려 行政府의 事業의 優先順位에 대한 政策決定者の 認識에 관한 問題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經濟開發에 投資된 財源도 不正의 對象이 될수 있다는 點과 둘째 經濟開發自體의 成功的인 達成에 있어서도 그 計劃段階에서 執行段階에 이르기까지 行政官吏의 積極的인 勤務態勢가 重要的 要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結局 大部分의 公務員이 公務員以外의 사람들 보다 낮은 生活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며 그들의 生活費는 結局 債給以外의 國庫와 直接間接으로 關聯된 곳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事實때문이다.

이때문에 公務員報酬引上에의 投資는 經濟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이다.

이러한 낮은 報酬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現象을 惹起시킨다.

#### 가. 不正에 對한 社會規範

낮은 水準의 報酬는 公務員自身은 勿論 一般國民들에게도 公務員들이 하는 些少한 不正을 不正으로 意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例를 들면 衛生檢查를 온 保健所의 職員에게若干의 金

品을 준다는 事實이 주는  
사람은 勿論 이것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도 強한 罪意  
識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어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의  
辯明이다. 境遇에 따라서  
는 이것을 마치 慈善行爲나  
한것처럼 이야기 한다. 「겨  
우 이거야 너무 한데」 또  
는 「우린 뭘 먹고 살어 ?」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不  
平 또는 辯明이다.

### 『米價團東을 나간 某廳

의 職員이 懲戒委員會에 (註; 公務員의 士氣 및 이것이 政治的態度 形成에 미치는 영향 1966. 7月) 회附되었다. 理由는 商人이 一金 4,000 원이 든 封套를 그 職員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職員의 救命運動을 하는 者의 이야기는 그까짓것을 먹었는데 龍兎이라니 너무 하다는 것이다. 다른 同僚職員들도 大體로 「運이 나쁘다」「너무하다」「말도 안된다」「송사리만 걸린다」라는 語調이다.』

即 그 程度는 罰을 받을 條件이 못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의 根源에는 恒常 薄俸이라는 事實이 潛在意識化되어 도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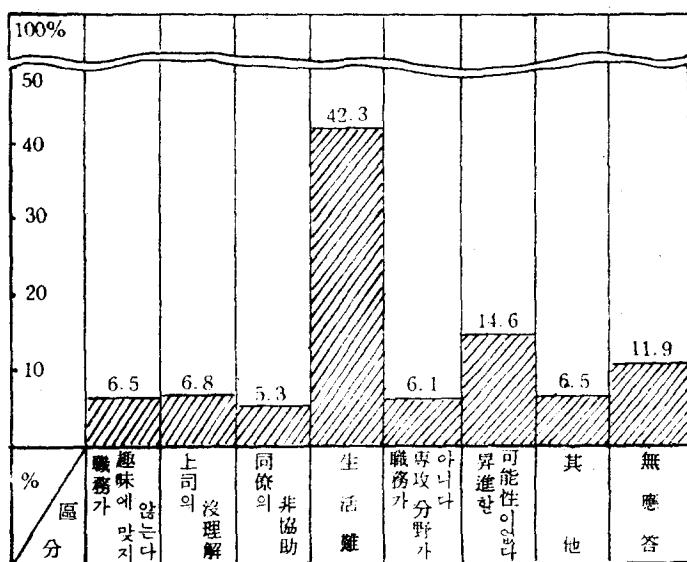
또한 一般國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學父兄이 얼마간의 金錢을 豐出하여 先生님의 生活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當然한 일로 되어있다. 그 自體를 美譽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다음은 一般國民의 公務員의 不正에 對한 意識程度를 엿보는 좋은 事例이다.

學者, 實務者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

即 한 業者가 어느 公務員으로부터 많은 身勢(?)를 졌다. 그런데 이 公務員이 入院하게 되었다. 그 公務員의 家族의 한 사람이 그 業者를 찾아갔다. 그러나 業者は 「요세는 事業이 잘 안되어서」라는 辯明과 함께 그가 期待하였던 額數와는 너무나 작은 돈을 주드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大體로 「그럴수가 있는가!」「背恩忘德한 者」「다시는 相對할 수 없는 사람」「利用價值가 없으니 그렇지」라는 것이다.

■ 1 韓國公務員이 當面하는 諸問題



이것은 우리나라 固有의 美風에 不正의 風潮가 便乘된 것이라 하겠다. 公務員이 그에게 준 恵澤이 마치 그의 私有物 또는 個人的인 權利에 의하여 준 恵澤처럼 생각하는데서 오는 말하자면 官職私有의 思考方式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風潮는 後述하는 다른 要因도 作用하겠지만 亦是 그 根源은 무엇보다도 公務員의 薄俸에 緣由한다고 보겠다.

이와같이 어느 만큼의 不正是 이미 不正이 아니라는 程度로 罪意識이 鈍化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러한 程度의 것을 말하거나 責하는 사람이 「甚한 사람」, 「融通性이 없는 사람」, 「말 못붙일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人間性이 缺如된 사람」으로 烙印이 찍히는 社會的規範이 造成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極히 重大한 事實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이미 依法處斷이라는 手段으로서는 勸當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도둑을 열명의 巡警이 잡기 힘든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事實을 團束하는 公務員들 中에도 그러한 規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即 전·발잔을 同情하지 않을 사람은 極히 드물 것이라는 事實을 想起하면 足하리라.

역울한(?) 事件으로 左遷되었다가 다시 復歸하는 公務員의 數가 많다는 事實이 그 좋은例이다. 심지어는 下記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懲戒委員會에서 罷免된 公務員의 約 54%가 다시 復職하여 勤務하고 있다.

이것은 同僚나 上官이 그가 역울하게 罷免당하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現象의 하나다. 法制度가 그 對象이 되는 사람들의 共感과 支持가 없이는 얼마나 無力한 것인가하는 것은 常識에 屬하는 問題이다.

表 1 懲戒된者的 그 後의 狀況

	1 復職	2 停職	3 轉補職	4 其 他	5 未 詳	6 計	·	總人員數
1	罷 免	54%	17.5%	%	1.4%	27.1%	100%	74명
2	停 職	45.8	16.6	29.2	8.3		100	24
3	減 債	54.8	3.2	42			100	92
4	謹 慎	80		20			100	56
5	譴 責	78	0.9	18	2.3		100	208
	총인원수	308	24	96	8	18		454

註 1965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末日까지 국세청, 채신부, 공보부, 원호처, 재무부, 교통부, 전래청, 농림부, 상공부, 조달청, 전설부 11개 기관의 자료집계임.

故로 公務員의 債給을 너무나 많다는 非難이 나올 程度로 올린다는 것이 긴 眼目으로 볼 때 國民들은 보다더 산 稅金을 負擔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모든 國民이 監視하는 것이

다. 即 「그렇게 비싼 債給을 받고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미 強한 Public Control 下에 있는 것이다. 또한前述한 바와같이 結局 公務員들은 直接 間接으로 國庫와 權力에 의하여 現在의 生活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意味에서 鐵道廳, 手荷物事件도 이 카테고리에 屬한다고 볼수 있다. 關聯된 公務員들은 이미 自由黨때부터 하여 오던 慣習이며 別로 대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 나. 各級上級者の 不正에 對한 態度

薄俸이 惹起시키는 또하나의 事實은 各級上級者が 어느 程度의 不正是 이것을 默認하거나 또는 指示한다는 事實이다. 公務員들 間에는 勿論 一般人들 間에도 이것은 不正에 對한 社會規範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兩者는 惡循環을 거듭한다.

例를 들면 架空的 出張命令을 發하여 旅費를 支給한다는 事實이 그것이다. 이러한 公金의 分配는 거의 常識化되어 있으며 現在로서는 이것을 別로 不正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上級者를 有能한 上級者라고 한다. 事實上 現狀態下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上級者를 有能한 上級者라고 할 수 밖에 없다. 事業費를 節約하여 部下의 生計費를 도와주는 上級者は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不法을 指示할 수 밖에는 없다. 下級實務者는 虛偽·證憑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企業體에서 그들의 平常時의 敬心을 사기 위하여 또는 特別한 Favor를 얻기 위하여 베푸는 향연에 部下同僚를 帶同하여 그들의 土氣를 振作(?)하고 金品을 部下의 生計費補助로 分配하여 준다.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한 不正是 不正이 아 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다만 그 程度가 問題視될 때쯤이다. 이러한 事例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不正蓄財로 發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가지 重要한 것은 이것이 上納의 形式으로 發展한다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上級者の 決定을 不當한 것으로 또는 當事者들에게 不公平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原因을 造成한다: 또한 이것은 人事行政上의 不公平을 造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實質的으로 部下를 統率하는 힘을 弱化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어느 程度의 線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被動的이나, 能動的이나 또는 消極的이나 積極的이나에 따라서 惡質公務員이나 比較的 良心的인 또는 紳士的인 公務員으로 分類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被動的인 境遇와 消極的인 경우는 이것이 摘發되더라도 大體로 默認되며, 간혹 運이 나빠서 外部 機關에 의하여 摘發되더라도 寛大한 處罰에 끝인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에 事件이 暴露되는 것은 大體로 分配의 不公平으로 因한 内紛으로 顯在化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賢明한 上級者は 이 點에 관하여 많은 神經을 쓴다. 同時に 上納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額數에 따라 部下의 地位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든 事態를 誘導한 根源은 結局 낮은 水準의 債給에 있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

으며 그被害의補償은 結局直接間接으로 國民이負擔한다는事實을 엊어서는 안될 것이다.

#### 다. 個人的利害와 關聯되지 않는業務에 對한 無誠意

薄俸이 가져오는 또하나의悲劇은 많은公務들이自己個人의利害와 關聯되지 않는業務에對하여極히無誠意하게對한다는事實이다. 이것은自己가맡은業務中例를 들어上級者로부터直接認定을 받을수 있는業務같은것에熱意를낸다는것이다. 이것은極히 좋은現象이라고할수 있다. 그러나反面에 사람에따라서는自己가格別히付託을 받은業務에 대하여도亦是熱意를낸다는경우가許多하다. 이와같은付託은大體로健全한行政을侵害하는것들이다. 主로公正한決定을害치게하는것이많다.人事,有利한鑑定또는檢査,特定事業을위한豫算,特定事業에대한特惠等의請託이이範疇에屬하며이러한請託을받은公務員中에는熱誠을다하여그일을成事시키는사람이많다. 그리하여그러한努力의對價를받는것이다.

이것은앞에서말하는消極的인 또는被動的인경우이다. 그러나이것이習慣化되면積極的인 또는能動的인不正으로變化해나간다는것은말할必要도없다.終局에는그러한케이스를찾아해매는것을爲主로하는公務員으로轉落하는것이다.

#### 2. 安定性의 缺如

一般的으로生活이나地位 또는身分面에서安定된사람일수록社會制度나慣習·傳統等의面에있어서의變化를싫어한다. 그들의態度는보다保守의이며慎重하고消極의이다. 따라서急進의인革命은勿論그들의地位 또는身分에관한如何한變化도意識의으로또는無意識의으로이것을避한다.

一般的으로身分이安定된公務員은機關長이나上級者の交替에關하여도極히細心한注意를하는것이다. 그러므로公務員이란職業의利點은身分保障이라는點에있는것같다.

그러나筆者の調查에의하면우리나라公務員의約28.2%가「身分保障」그리고11.7%가「安定生活」을할수있다는것이나타나고있다. 아래圖(圖2)에서보는바와같이私企業이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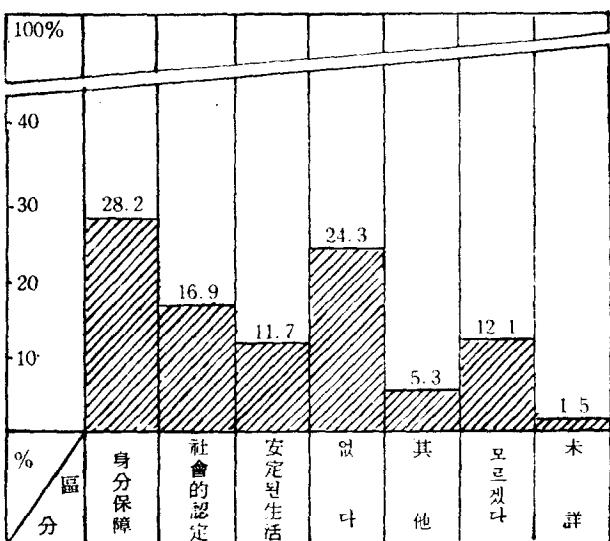


圖 2. 다른職業에 比한 公務員 生活의 利點  
(註: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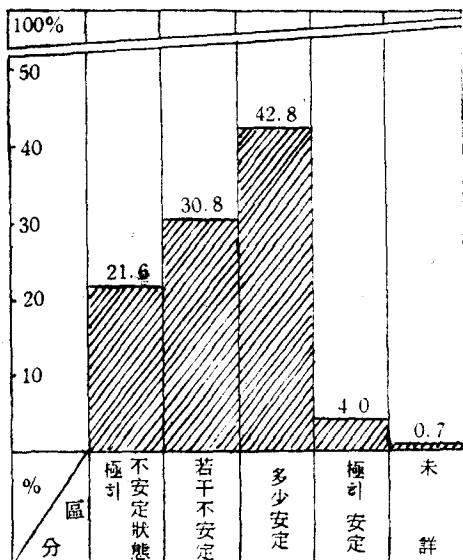
發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亦是公務員의 利點을 身分保障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公務員으로서의 職業에 比하여 何等의 利點이 없다는 層이 全體的으로 約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르겠다는 層과 合하면 約 36.4%가 된다는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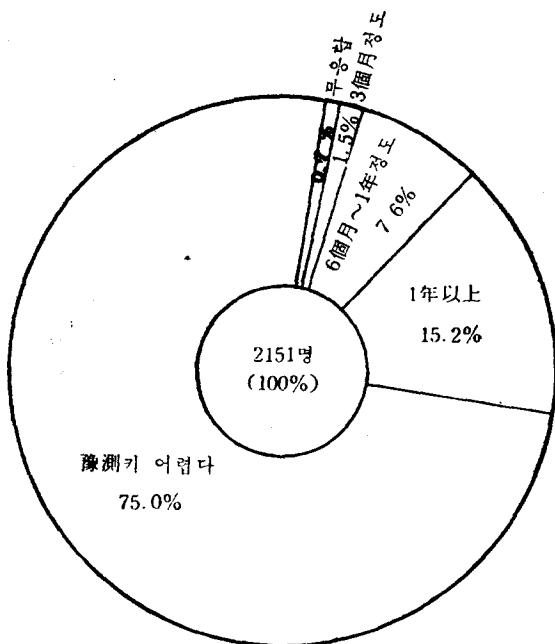
問題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들의 生活面에 對한 安定感은 더욱 不良하다. 即 이들의 生活態度가 다른 職業에 比하여 多少 安定되어 있다는 層은 約 42.8%나 된다(圖 3). 이것은前述한 바와 같이 이것을 公務員의 報酬가 極히 낮다는 客觀的인 事實과前述한 不正과 關聯하여 生覺하면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一面도 있다. 그러나 約 52.4%의 公務員만이 生活이 不安定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即 모든 公務員이 不正行爲者는 아님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現職責 또는 補職에 대한 安定感은 더욱 不良하다. 即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務員의 約 75%가 그의 職責을 어느 程度維持할 수 있을 런지 알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적어도 一年以上을 維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公務員은 不過 全體의 15.2%에 不過하다. 이 事實은 公務員의 現補職에 대한 保障感을 어느 程度엿 볼 수 있게 한다.(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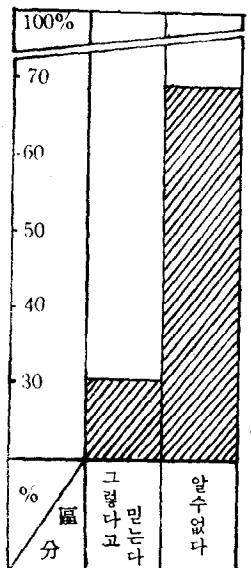


■ 3. 公務員의 生活安定感  
(註: 同上)



■ 4. 現補職 在職에 對한 豐測期間  
(註: 同上)

마지막으로 未來에 對한 保障感을 보기로 한다. 다음 圖(圖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務



■ 5. 公務員生活의  
將來保障感  
(註：同上)

員으로서 热心히 勤務하면 將來에 보람있는 生活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는 質問에 대하여 그렇다고 믿는다는 公務員은 30%에 不過하고 나머지 68.3%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参考로 믿는다는 사람은 年齡別과 學歷別로 보면 각각 다음 表와 같다. (圖 6,7 參照)

上述한 調査結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公務員의相當한 數가 生活이 不安하고 未來에 대한 保障이 없는 狀態下에서 勤務하여야 한다.

故로 于先 公務員이 前述한 바와 같이 直接 自己에게 利害一그것이 公益과 一致되진 안 되진 간에——가 없는 業務에 대하여는 極히 被動的으로 對하는 것이다. 그러나 身分과 未來에 대한 保障感의 缺如는 그러한 現象을 더욱 飛躍시킨다. 自己가 언제 그 職責에서 물려날지 모른다는 생각은 極端的으로는 社會一般의 金錢萬能思想의 作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最少限 生活에 대한 財政的인 基盤만은 만들어 놓자 하는 생각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이것이 不正蓄財로 發展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 좋은 자리 」로 가기 위하여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直接 間接으로 權力者에 接近한다. 人事上의 腐敗, 上官에 對한 지나친 아부는 大體로 이範疇에 屬한다. 甚之於는 不正의 結果를 基盤으로 그 자리를 維持하거나 보다 더 「 좋은 자리 」로 가기 위한 運動을 하기도 한다. 또한 私企業體에서 官의 庇護없이는 그 事業을 支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官職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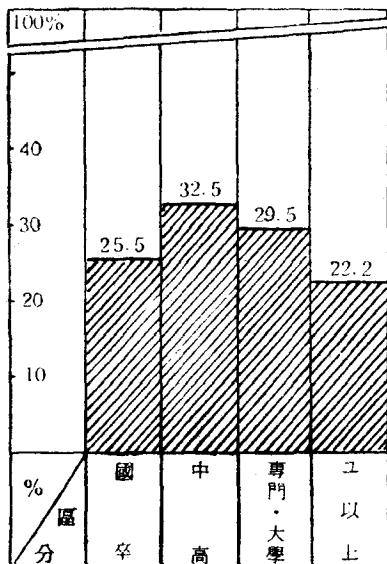
權力者の庇護없이는 官職을 維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常識化되어 있는 事實이며 좋은 자리를 維持하고 獲得하기 위하여는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正直性 能力等은 너무나 無力한 것이되고 만다. 上納은 大體로 이러한 手段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名節이나 權力者の生日 그의 家族들의 結婚式日字等을 잊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一般 經濟界에서 말하는 富益富는 公務員의 世界에서도 어느 程度 適用된다. 閑職에 오래 있었던 公務員은 더욱 더 비참한 生活이 繼續되고 좋은 자리에 오래 있었던 公務員은 一時 그자리에서 물려났다 하더라도 곧 다른 좋은 자리로 再起한다. 또한 앞의 調査에서 보는 바와같이 自己는 언제 그 자리를 떠날지 모른다. 그리고 热心히 勤務하드라도 將來가 保障되지 않는 狀態下에서 無事主義을 탓하고 忠實한 勤務와 良心 그리고 愛國心을 要求하여도 많은 效果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같은 保障感의 缺如는 또한前述한 薄俸과 더불어 職場을 個人的 用務를 보기 위한 中心地乃至는 連絡事務所化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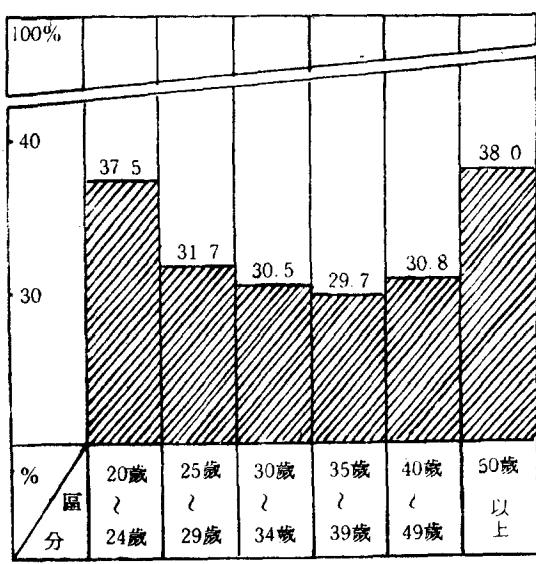
勿論 모든 公務員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中間管理層以上의 경우에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所謂「 좋은 자리」의 경우는 그 自體大概充分히 바쁘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 即 閑職의 경우는自己의 職務와 直接 關聯이 있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付託行腳을 하러 다닌다. 누구를 紹介하여 주거나 또는 直接 間接으로 누구에게 付託을 하거나 어떠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相談役의 役割도 한다. 그리하여 그의 本業이 무엇인지 識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官公署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事實이 重要한 것이다. 이것은 그 内容에 따라서 몇 사람의 仲介人을 通하여 間接的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結局 그의 位置는 그의 地位와 付託件을 解決하기 위한 仲介所로 轉落되고 마는 것이다.

結局 이러한 모든 事態는前述한 薄俸과 그리고 그의 地位나 未來에 대한 保障感의 缺如에서 오는 것이다. 年金制度는 이러한 意義에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 6. 學別로 본 公務員生活의 將來保障感(將來가 保障된다고 하는 層)  
(註: 同上)



■ 7. 年齡別로 본 公務員生活의 將來保障感(將來가 保障된다고 생각하는 層)  
(註: 同上)

### 3. 行政統制 및 管理基準의 非現實性

完全한 貿易自由體制下에서는 密輸란 있을 수 없다.

治安局集計에 의하면 警察에 立件된 公務員犯罪者數(圖 8)는 1959년의 852名에서 1960년의 401名으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軍事革命이 일어난 1961년에는 무려 4,448名으

로 一年間에 約 10倍가 增加하였다. 그러나 革命의 다음해인 1962년에는 다시 前年度의 半도 輸出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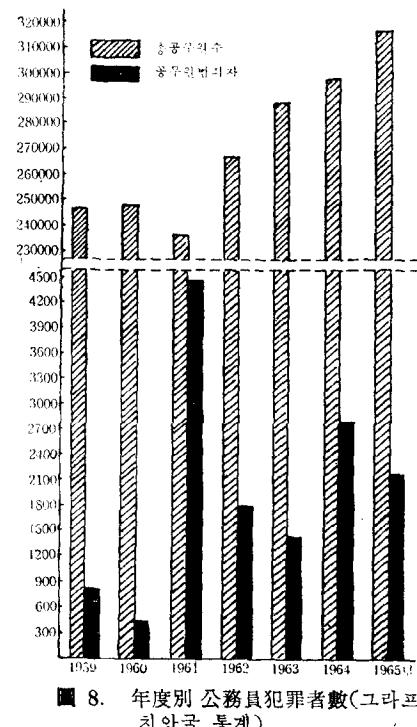
이 數字에서도 우리나라 行政의 妙味를 엿 볼 수 있다. 即 自由黨末期에서 軍事革命直前 까지의 政治的 社會的 混亂은 두 말할 것도 없고 公務員의 紀綱이 極度로 紊亂하였을 때에 따라서 公務員의 犯罪가 가장 많으리라고豫想되는 때의 數가 이렇게 작을 수 있었을까 하는 點이다. 上述한 表에 의하면 1959년도 및 1960년도에 가장 公務員의 紀綱이 確立된 時節이라고 할 수 있다. 問題는 바로 여기에 있다. 即 어느 程度 團束하였는가가 問題이다. 이것은 마치 交通安全週間에 交通事犯이 더욱 많다는 事實과 같다. 이때 運轉手나 步行者가 交通規則을 더욱 無視하는 것은勿論 아니다. 오히려 더욱 操心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團束의 程度가 強하였던 것이다.

다른 모든 行政管理基準의 境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961년도 軍事革命直後에 한동안 “強力한 團束”이 있었으며 警察에서 立件된 公務員의 數가 前年度의 10倍가 될 것도 바로 이해문이다. 이와같은 “強力한 團束”은 가끔 또는 너무나 紀綱이 紊亂하였을 때에 또는 沐浴欲이나 쇠고기欲을 내리게 하는 手段으로서 하여서는 안된다. 結局欲을 내리기만 하면 強力한 衛生檢查를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程度 非衛生의이라도 눈감아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故로 平常時에는 大體로 大部分 規則이나 規定을 無視하고 있으며 檢查員이 언제든지 立件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立件할 수 있는 實情에 있으며 또한 그러한 까닭에 業者側에서는 恒常 그들에 定期的으로 또는 臨檢時에 「잘 봐달라」는 格別한 付託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上述한 強力한 團束은 恒常 實施하여야 한다. 萬一 人力 또는 豫算上의 理由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規定이나 命令은 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問題가 있다. 그것은 法規나 命令 또는 其他 모든 行政管理基準에 있어서의 現實性 또는 그것의 實現可能性을 打診한 然後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그와같은 法規나 命令이 現實과 너무나 遊離될 때에는 거기에 不正이 생기는 것이다.

例를 들면 政府財產의 拂下價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많은 競爭이 생기고 따라서 決定權者에게 恪



別한考慮가 있기를付託하게된다.勿論 모든것을一律的으로그렇게하기는어려울지모르나이와같은경우에있어서도그價格이時價와大同小異하다면그러한競爭도없을것이며따라서不正이있을수없다.同時에國庫收入도增加될것이다.政府에서하는各種建設事業의경우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銀行의金利가市中の 그것보다너무나差異가甚하기때문에不正이介在된融資斡旋이라는現象이생긴다.萬一特定產業을政府에서育成할必要가없다면그리고市中の金利와銀行의金利에차이가없다면不正是相當히출어들것이다.그리하여外國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오히려銀行側의融資를주기위한宣傳現象이생겨날것이다.

이와같은行政管理基準의非現實性때문에생기는不正은大體로다음과같다.

첫째豫算編成基準의非現實性을들수있다.現實的으로必要한豫算이없거나있어도너무작은경우가그것이다.

例를들면現公務員의旅費規程에의하여는到底히出張業務를마칠수없다.그러한까닭에5日間に볼수있는出張期間을10日間으로한다든가한사람이가는出張을두사람으로文書偽造아닌文書偽造를한다.또는檢査費가거의없거나너무나작기때문에가지가지의不美스러운일이생기며그러한口實下에個人의용돈까지도調達하게된다.

現實的으로中央官廳에서公務 또는私務로地方에온경우地方官廳에서到底히이것을無視할수없다.그렇게公式的으로對할수있기위하여는現與件下에서는中央官廳에너무나權限이集中되어있다.그러나이들을迎接하기위한辦公費는너무나작다.그러한까닭에다른事業費를過多하게要求하게되거나또한項目을流用하는것이다.前述한바와같이豫算闘爭을위한公金流用은大體로機關長이默認하거나指示한다.補助金을보다더많이따기위하여또는餘裕가있을수있는事業을위한豫算이그것이다.勿論이와같은경우에도公務員個人의용돈이調達될수있다.또한派出所의不足한燃料費가民弊의原因이되는것이며用紙代의豫算不足이學父兄으로부터雜賦金을徵收하게하는 좋은口實이되는것이다.

이러한모든경우에共通의現象은그와같이하여調達된金品의一部또는全部가個人의주머니로들어갈수있는可能性이充分히있다는事實이다.

둘째는豫算의뒷받침이없는無理한指示또는命今이다.이것은主로權力機關에서볼수있는現象이다.各種行事때懸垂幕을달게하거나아취를세우게한다또는道路標識을세울것을指示한다.이러한것이民弊의原因이요,不正의口實이된다는것은當然한일이다.또는특히下部機關의경우突發의指示나命今이下達되면部下職員들을夜勤을시킨다.命今을발하는사람은모르나命今이下達된機關의責任者は部下들이밤늦게까지夜勤하는것을目擊한다.그리하여이들에게일을마치고난다음에술한잔값이라고주

고 싶은 것이一般的인 人情일 것이다. 이처럼 偏成된 豫算대로 運營되는 政府機關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째는 各種統制基準의 非現實性이다. 萬一 完全히 法規定대로 團束을 한다면 現在 自動車의 大部分이 車輛檢査에 不合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大部分의 料食業體가 衛生檢査에 걸려서 營業停止處分이나 營業許可를 取消當할 것이다. 理髮所나 美粧院, 호텔, 旅館들도 마찬 가지이다. 許可된 內容대로 建築한 建物이 얼마나 될지 疑心스러울 程度다. 勿論 그렇다고 하여 모든 團束基準을 廢止할 수는 없다.

그러나前述한 바와 같이 一旦 政府에서 設定된 基準은 徹底하게 지켜야 한다. 萬若前述한 바와같이 그렇게 遵守시킬 豫算이나 人力이 없다면 現實과 어느程度妥協하여 그 基準을 어느程度 낮추어야 한다. 即 團束할 수 있는 모든 業體를 公平하게 어느限度까지 緩和할 수 밖에 없다. 現在와 같이 各種統制基準이 어떤 意味에서 理想의이라고 할 수 있을 程度로 높기 때문에 大部分의 對象者가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즉 違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團束班員들은 아무데나 가서라도 언제든지 그 違反事項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業者들이 營業行爲를 하고 있다는 事實은 大部分의 業者가 公務員의 不正을 助長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前述한 바와 豫算編成이 非現實의이기 때문에 大部分의 行政機關이 豫算會計法을 違反하고 있으며 따라서 會計監査를 하는 사람은 大部分의 機關에서 摘發하고자 하기만 하면 그것이 大體로 可能한 것과 같은 現象이다.

그리기 때문에 行政官廳의 機關長이나 會計擔當官은 監査官을 平常時에도 소홀히 對하지 않는다.

故로 豫算編成에 있어서는勿論 指示命令이나 各種統制基準등 其他 모든 行政官廳의 基準이 現實性 또는 實現可能性과 너무나 距離가 멀어서는 안되는것이다.

#### 4. 其他

不正을 造成하고 公務員의 紀綱을 紊亂케 하는 制度의 要因에 關하여는 以上에서 大體로 檢討하였지만 以外에도 行政手續의 繁雜性, 各種 決定에 있어서 上官 또는 一般國民에 대하는 公務員의 自由裁量權의 濫用등이 不正을 造成하는 경우가 많다.

行政官廳에 있어서의 上官의 部下職員에 대한 自由裁量權의 濫用은 主로 人事上의 腐敗를 助長한다. 轉補 等의 경우에 일어나는 各種 情實人事가 그 例이다.前述한 上納의 主要原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上納은 어느 程度의 勤務怠慢이나 不正을 默認하게 되는 原因이 되는 것이다.

둘째의 一般國民에 대한 公務員의 自由裁量權의 濫用이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法制度의 未備인 경우도 있으나 大部分의 경우는 決定權者인 公務員이 그의 態度나 理解, 情實에 의하여 主로 對民關係에서 不公平한 決定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現與件下에서 모

는 行政行爲를 法令으로 規定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例를 들면 各種統制基準이 非現實의이기 때문에 團束班員들은 自由裁量에 의하여 摘發할 수도 있고 無視할 수도 있다. 建築許可內容과 같은 것으로 處理할 수도 있고 違反된 것으로處理할 수도 있다. 또는 交通法規를 違反한 것으로 處理할 수도 있고 團束者가 미처 못 보았거나 또는 違反하지 않은 것으로 處理할 수도 있다. 警察, 監查院, 檢察에서의 自由裁量의 幅은 더욱 넓다.

세째는 前述한 바와 같은 Red-tape이다. 지나친 形式性을 要求할 수 있는 現 行政規程 그리고 時間을 다투는 認許可 事務는 갖가지 大小의 不正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相當한 法律知識을 가진 사람도 公務員들이 「指定하는 代書士」를 通하여 일을 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 三. 環境的 要因

一般的으로 公務員의 不正을 論할 때 公務員을 탓한다. 公務員이 나라와 政府를 亡치고民生을 어지럽히는 張本人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의 不正是 公務員만의 責任이 아니라 오히려 一般社會에 公務員의 不正에 대한 보다 더 큰 責任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크게 經濟的 社會的 不安定狀態 그래서 야기되는 近視眼的 生活態度 그리고 이에 隨伴되는 金錢一邊倒思考, 그리고 나아가서公共意識의 薄弱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 1. 經濟的 社會的 不安

經濟的 社會的 不安定狀態下에서는個人이 긴 眼目的 또는 長期的 計劃을 하거나 未來의 어떠한 狀態를 期待할 수가 없는 것이다. 來日을 豫測할 수 없거나 또는 日常生活에 있어서萬事가 確實하지가 않은 것이다.

勿論 現在의 우리나라 經濟的 社會的 狀態가 極度로 不安定한 狀態下에 있는 것은 아니나 大體로 不安定한 便이라는 것만은 事實이다.

于先 8.15의 政治的 變動과 그 後의 갖가지 테로 事件을 包含하는 政治的 不安 그리고 6.25의 慘劇과 破火속의 避難行脚, 몇번에 걸친 貨幣改革과 갖가지 政治波動 그리고 두번에 걸친 革命等은 國民들의 記憶에生生한 것들이며 이러한 事實들이 不過 2.3年間에 變動이 없었다고 해서 그 不安全感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現實的으로 極度로 治安狀態가 紊亂할 때의 手段인 通行禁止令을 우리나라의 大都市에서廢止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또한 38線과 共產圈의 重壓을 받고 있다. 例를 들면 北쪽으로 갈수록 地價가 싸다. 또한 高利債整理 等은 經濟的 安定感을 害친 것이 事實이다. 그밖

에 因作과 穀價波動 그리고 지나칠 程度로 많은 紙面이 割當된 갖가지 犯罪報道…… 이러한事實등이 于先 心理的으로 사람들을 不安하게 한다. 여기에 惡性인프레가 添加하여 사람들의 經濟生活을 危脅하고 있다.

그리하여 1965 年度에는 警察의 全刑法犯의 69.8%가 窃盜, 賊物, 詐欺 橫領, 背任等의 財產犯罪이며 이것은 1959 年度의 3 倍以上의 數에 達한다. (圖 9 參照)

이와같은 狀況에서 엿볼 수 있는 現象은前述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긴 眼目의 生活態度를 갖지 못한다는 點과 둘째 보다 더 金錢에의 依存心이 強하게 나타나며 셋째로는 公共心이 稀薄하여 간다는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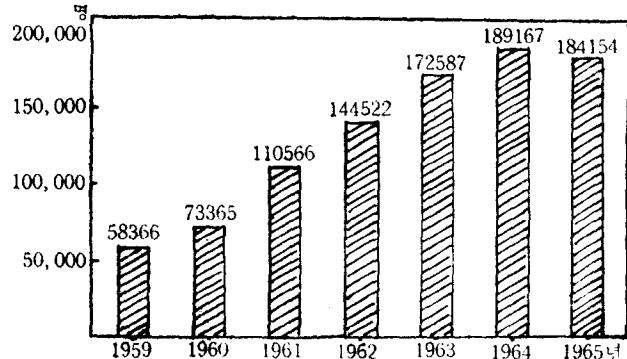


圖 9 年度別 財產犯罪發生狀況  
(註：同上)

## 2. 近視眼的 生活態度

中小企業體는 勿論 大企業體의 경우에 있어서도 「短時日內에 밀чин이 빠지지 않으면 재미를」보지 못한다고 한다. 甚至於是「산지 다섯달이나 되었는데 아직 택시 값을 못 뺏어요」하는 택시 運轉手의 말을 듣는다. 그러기 때문에 「먹는 장사가 제일이야요. 今方 밀чин을 견지는 결요. 먹는 장사 처놓고 잘 안되는게 있나요?」하는 말도 자주 듣는다. 即 資金의 回轉이 빠른 事業이 좋다는 것이다.

社會的・經濟的 狀態가 不安全할 때에 사람들은 他人을 極度로 不信한다. 特히 金錢去來에 있어서 그려하다. 그리하여 就職을 하는데에 있어서도相當한 保證金을 要求하는 奇現象도 생기는 것이다. 또한 不動產에 보다 더 많은 投資를 하는 傾向도 그 理由는 여기에 있다.

即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不安全感에 于先 먹고 보자는 생각을 갖게되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手段을 別로 重要視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正當한 努力에 依한 對價보다도 그 手段과 額數가 보다 더 重要視된다. 例를 들면 政府와의 工事契約이라든가 또는 物品調達契約에 있어서도 正當한 工事에 의하여 또는 納品에 의하여 어느程度의 利益을 갖고 오느냐를 計算하는 事例 보다도 如何히 檢查官이나 檢收官을 買收하느냐를 궁리하는 事例가 보다 더 많다. 따라서 工事에 所要되는 諸費用 속에는 大部分 公務員을 買收하기 위한 交際費가 많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前述한 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罪意識이 鈍化되어 있어서 그러한 費用은 一般事業家들에게는 常識化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準에 未達되는 工事와 物品은 그

企業體의 信用같은 것을 無視하는 處事이며 長期的인 發展을 念頭에 두고하는 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次期에는 무엇이 어떻게 當할지豫測을 할수가 없다. 例를 들면 相當 公務員이 다른 곳으로 轉出될지도 모른다. 政府 또 政府機關의 政策이나 事情이 언제 어떻게 变할지 모른다. 擔當公務員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競爭者에게 어떠한 手段으로 매수 當할지 알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 問題가 되는 것은 次期에 어떻게 工事を 할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擔當公務員을 매수할 것인가라는 點이다. 또한 公務員側에서도前述한 바와 같이 職責에 對한 保障感의 缺如와 薄俸이라는 事實등이 이들의 誘惑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立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監查機關에 摘發當하지 않는 것이 唯一한 行政行爲의 基準이 되어있다.

### 3. 金錢에의 過剩依存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金錢에의 依存度가 높다고 하는 것은 決코 不健全한 思想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的 經濟的 不安定속에서 발생하는 金錢萬能思想은 性質이全然 다른 것이다. 未來를豫測할 수 없는 그리고 各種制度나 行政官廳을 不信하는 狀況下에서 信義나 道義나 良心같은 修身 教科書에만 存在하는 文句들은 너무나虛弱하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은 金錢뿐이라는 生覺을 意識的으로 또는 無意識的으로 갖게된다. 따라서 金錢을 위하여는 殺人強盜도 逃亡시켜준다.

努力이나 實力이 官廳에 있어서의 公務員을 發展시키는 것이 아니라 金錢의 威力으로 發展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政府에 대한 忠誠心보다는 上級者 個人的 利益에 대한 忠誠心이 實力이나 誠實한 勤務보다도 더욱 그 地位를 確固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公務員으로 20餘年을 勤務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다.

「별써 제나이 50줄에 가까워 갑니다. 자식 놈이 벗이나 됩니다. 제가 ○○로 있을 때에는 그럭저럭 生活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리 오고난 뒤에는 매달 赤字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人心이 그렇더군요 이번 秋夕에 개미새끼 한마리 안찾아 오더군요, 큰일 났어요, 그래도 ○○로 옮기면 좀 낳을 거예요. 거기서 나간다 하드라도 最少限 ○○ 자리는 하나 따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커가는데 어느 程度 生活의 基盤을 닦아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 보지요」

結局 獵官運動을 하기 위한 돈이 必要하다는 이야기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金錢一邊倒의 思潮는 公務員들에게는 不正과 直結되는 危險千萬의 現象이다.

그러므로 社會的 經濟的 不安은 긴 眼目的 生活態度를 앓아 갈뿐만 아니라 나쁜 意味의 金錢萬能思想을 가져오며 이러한 思想이 公務員들에 不正을 불러 일으키는 直接的 原因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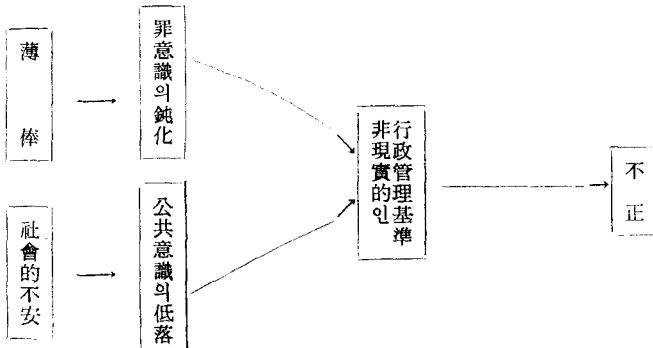
#### 4. 公共意識의 薄弱

社會的으로 그리고 經濟的으로 不安定한 狀態下에서는 사람들은 생활과 마음의 餘裕가 없어지며 極度의 自己防禦態勢를 갖추게 된다. 即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己個人에 대한 방어태세에 不過한 것이며 그 防禦對象은 自己와 自己 家族이다. 사람들은 自己와 直接 利害關係가 없는 問題 即 公共의 問題에 관한 關心은 極히 희박하여 진다. 그러나 反對로 自己의 利益을 侵害할 憂慮가 있는 問題에 대하여는 극히 敏感한 反應을 보인다. 텔끝만치라도 被害가 있을 것 같은 問題에 대하여는 意識的으로 이것을 責한다. 簡單한 手苦로 公共의 큰 利益을 保護하고 싶은 마음의 餘裕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自己에게 直接 利害關係가 없는 不正을 告發할 마음의 餘裕가 있을 리 없다. 不正을 한탄하고 憤慨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自己周邊의 不正을告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關係公務員들의 團結에 의하여 어떠한 報復이 올지도 모른다. 事實上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나 恨歎이나 憤慨가 自己防禦의 間接的인 手段인 경우도 가끔 있다. 例를 들면 茶房에서 사카린 密輸에 興奮하는 사람이 진짜(外製) 파인쥬스를 찾는 것 같은 것이다.

또 한가지 面은 一般大小企業家들은 官의 庇護없이는到底히 事業을 維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現時點에서는 筆者自身도 無理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不正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일일이 例示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萬一 國民의 한사람 한사람이 不正을 監視하고 公共의 利益을 保護하려는 態度를 取한다면 不正是 極히 줄어 들 것이다.

以上의 不正의 原因을 簡單히 그림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四. 結語

以上에서 筆者は 公務員 腐敗의 要因을 制度的인 面과 環境的인 面에서 分析해 보았다. 여기서 以上的 腐敗에 對하여 現時點에서 政府가 할수있는 可能한 改善策을 몇가지 提示

함으로써 結語에 代身하고자 한다.

#### 1. 報酬의 適正化

勿論 報酬의 引上이 곧 不正의 根絕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첫째 不正을 正當化하는 口實을 없애고, 둘째 不正에 對한 公共의 統制가 強化되고, 셋째 不正에 對한 罪意識이 強化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年金을 引上하고 이에 對한 認識을 強化시킬 것.

前述한 바와같이 「公務員으로서 热心히 勤務하면 將來에 보람있는 생활이 保障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不正을 없애는데에相當한 役割을 한다는 것은 說明을 要치 않을 것이다.

#### 3. 職責에 對한 保障感을 줄것.

勿論 이것은 長短點이 있다. 그러나 오래 있음으로서 不正의 要領을 習得하고 사람을 많이 사귐으로써 公平을 잃는다는 短點도 있으나 不正의 類型은 대개 비슷하며 그 部處에 몇 년 勤務하면 大體로 그 職責에 있거나 없거나 알게된다. 그러한 消極的인 方法보다는 根本的인 公務員의 心理的 保障感을 준다는 것이 보다 더 重要한 것이다.

#### 4. 實質의in 褒賞을 實施할 것.

1965년도에 賞勳을 받은 公務員은 不過 148名이며 이中 内務部 治安局 113名을 除하면 不過 35名이다. 30萬名의 公務員에 不過 148名만이 褒賞의 對象이 되었다는 것은 賞勳法은 死文化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副賞制度도 極히 形式的이다. 또한 褒賞을 받은 者에 對한 同僚職員들의 態度도 別다른 것이 없다.

褒賞의 幅을 擴大하고 이것을 進級等의 人事管理에 現在보다 더욱 強하게 反映시키고, 副賞에 있어서도 例를 들면 一定期間동안 觀光旅行을 시킨다든가 하는 公務員들이 갖기를 願하는 副賞制度를 實施할 것이 要望된다.

#### 5. 各種 行政管理 및 統制의 基準을 現實化할 것.

豫算編成基準은 勿論 指示, 命令, 對民統制基準等을 現實化하여야 한다.

#### 6. 監查는 現與件下에서는 極히 非能率的이다. 그 理由는

첫째 薄俸으로 因한 同情, 또는 罪意識의 鈍化와 둘째前述한 豫算編成基準, 提示命令統制等의 行政管理基準이 非現實의이며 規程違反의 不得己하다는 事實을 監查官自身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監查가 積極性을 缺하고 있으며, 셋째 監查對象機關의 機關長을 為始한 全員이一致團結하여 監查에 對備하고, 마지막으로 監查對象機關의 固有한 業務에 대한 監查官의 知識의 缺如等이다.

故로 現時點에서는 徹底한 監查보다는 監查官自身의 紀綱確立과 監查官의 資質向上을 期해야 할 것이다.

- 7.懲戒制度도 大體로 앞서 提示한 諸理由와 機關長의 庇護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 5에서 提示한 豫算編成基準·指示命令 및 各種 對民統制基準을 果敢하게 現實化하여야 할 것이다.
9. 公務員裁量權을 最大限으로 客觀化 또는 制度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10. 各種 企業人の 自體統制制度를 講究해야 한다.